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46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3월 6일
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2019년 1월 30일 김춘례의원 · 김소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2건을 일괄 심사한 결과,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조례안의 내용을 통합·보완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체육 육성·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규정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200시간 이상의 자원활동봉사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연습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10조제1호·제2호)
- 나.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의 개인연습사용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 시 전용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함(안 제10조제1호·제3호)

다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(안 제10조제4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「생활체육진흥법」 「국민체육진흥법」 「장애인 복지법」 및 동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.

다. 기 타 : 해당없음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다목을 나목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

같은 조 같은 호 라목 중 “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”을 “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”으로 한다.

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

같은 조 제3호다목 중 “전국체육대회”를 “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삭제 <2010.1.7></u></p> <p>다. <u>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: 100분의 30감액. 다만,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라. <u>서울특별시육상경기연맹에 등록된 선수</u>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(트랙)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.</p> <p>2. 별표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삭제 <2010.1.7.></u></p> <p>다. ~ 마. (생략)</p> <p>3.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<u>전국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</u>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(현행 다목과 같음)</p> <p>다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<u>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</u>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<u>200시간 초과한 자: 100분의 30 감액</u></p> <p>라. <u>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육상연맹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<u>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</u>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<u>200시간 초과한 자 : 100분의 30 감액</u></p> <p>다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<u>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4. <u>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</u> 감액</p> <p>가. <u>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·행사</u></p> <p>나. <u>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·발전을 위한 행사</u></p> <p>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·행사</p> <p>라. <u>65세 이상의 노인, 12세 이하의 어린이, 장애인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·행사</u></p> <p>마. <u>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·행사</u></p> <p><신 설></p>	<p>4. <u>관내 초·중·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</u> 감액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